

「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8월 2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체육과장 이정의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헴프체험시설 관리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탁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명을 한글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 함(안 제4조제2항, 안 제11조)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관리위탁기간 갱신 사항을 명확히 함.(안 제4조제3항)
 - 관리수탁자 ⇒ 한 차례만 관리수탁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관리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탁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-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햄프전시체험실(이하 “전시체험실”이라 한다)”을 “햄프전시체험실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전시체험실”을 “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(이하 “전시체험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군수”를 “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6조”를 “「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관리수탁자”를 “한 차례만 관리수탁자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삭제하고,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전시체험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, 해당 관리위탁기간은 계속된다.